

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 주요내용

□ 안전운임제

- 법적근거 :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(2025.8.14.) 및 시행(2026.1.1.),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(2026.1.30.) 및 시행(2026.2.1.)
- 주요내용 : 시멘트, 컨테이너 품목의 화물차주가 지급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
 - (컨테이너 운임) ‘22년 안전운임 기준,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안전위탁운임 13.8%,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5.0% 인상
 - (시멘트 운임) 안전위탁운임은 16.8%, 안전운송운임은 17.5% 인상
 - (부대조항 보완) 험로·오지 운행 등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구체화 등
- 적용대상 :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(트랙터)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, 시멘트(BCT)
- 적용기간 : ‘26. 2. 1. ~ ‘28. 12. 31 (3년 일몰제)
- 신고센터 : 국토부^{교통안전공단} 안전운임신고센터 www.safetruck.go.kr, 1577-0990

《 '26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개요 》

구 분	내 용
운임종류	- 안전운송운임 : 화주(수출입기업·제조업체 등)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 - 안전위탁운임 :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
도입품목	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, 시멘트
위반시 처분	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 지급시 과태료 500만원